

2018년도 2/4분기

자체 감사결과 보고

2018. 7.

감사위원회

1. 서울마곡중앙공원 조성공사 특별감사

감사개요

- 대상기관 : 서울주택도시공사
- 기 간 : 2017. 11. 13. ~ 11. 24.(기간 중 10일)
- 인 원 : 안전감사담당관 안전감사3팀장 등 5명
- 감사범위 : “서울 마곡중앙공원 조성공사” 안전 및 시공 품질 관련
설계·공사·감리 업무 전반

감사중점

- 건설공사장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적정성 및 이행실태 전반
- 건축물 내진설계 및 소방시설 설치 적정성 여부
- 조경공사 관련 시공 품질관리 적정성 여부
- 설계변경 및 기성검사 적정성 여부 등

감사결과

- 지적사항 총괄

(단위 : 건, 천원, 명)

합 계			변상 (금액)	징계 (인원)	시정(금액)				주의 (인원)	개선	권고	통보	고발 (인원)	모범 사례 (인원)
총건수	신분상 조치인원	재정상 조치금액			소계	추징 (회수)	감액	기타						
18	5	18,912	- (-)	- (-)	7 (18,912)	- (-)	1 (18,912)	6 (-)	2 (5)		-	9	- (-)	- (-)

○ 주요 지적사항

1. 식물문화센터 온실동 내 '공중보행로' 설치작업 안전관리 소홀

-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작업할 때 안전대를 착용토록 하고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이상 유무 점검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나 높이 6m '공중보행로' 바닥판 용접작업을 하면서 작업 전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 이상 유무를 점검하지 않았으며, 작업 전 안전교육을 부실하게 실시함
-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감리자, 해당 건설기술자 등에 대해 벌점 부과 통보 및 지도·점검 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관리관에게 신분상 조치

2. 조립식 간이 흙막이 기성 정산 및 설치 부적정

- 조립식 간이 흙막이 시공과정에서 굴착 깊이 5m 구간에 대하여 설계도면과 다르게 굴착 하부 바닥 지면으로부터 높이 0.2~1.2m 부분의 굴착면에 흙막이 판을 설치하지 않은 채 불안정한 상태에서 작업을 시행하여 안전사고, 부실공사 발생 우려 초래
-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감리자, 해당 건설기술자 등에 대해 벌점 부과 통보 및 지도·점검 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관리관에게 신분상 조치,

3. 수목 식재 시 뿌리분 결속재료(고무바, 철선) 미제거

- '식물원A' 등 6개소 지역에 조경공사를 하면서 수목 4,250주를 고무바, 철사 등을 제거하지 않은 채 그대로 식재하여 식재지의 토양오염, 수목의 생육환경 저하 우려
-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감리자, 해당 건설기술자 등에 대해 벌점 부과 통보 및 지도·점검 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관리관에게 신분상 조치, 흙속에서 자연 분해되는 결속재료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「서울시 전문시방서(조경편)」 개정 추진

□ 결과조치

- 처분사항을 대상기관에 통보('18.4.10.)하여 조치토록 함

붙임

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

연번	처분요구 제목	처분유형	조치현황	비고
1	식물문화센터 온실동 내 '공중보행로' 설치작업 안전관리 소홀	주의요구, 통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추락방지시설 설치 후 작업시행 및 점검 확행 - 작업전 안전교육 일 1회에서 3회로 나누어 확행 - 일일 안전관리자 지정 후 현장점검 확행 ※ 관련자 신분상 조치 완료, 업체 벌점 부과 절차진행 중(상벌심사위원회 7월 개회 예정)	조치완료
2	양질의 식재기반 조성을 위한 토양개량제 혼합 시공 및 검측 부적정	시정요구, 통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표복굴착 11개소 주변 총 27,500㎡ 구간 토양개량 재시공 완료하고 토양 시험분석 후 유기물 함량 1% 이상 확인된 구역에 한해 수목 식재 중임. ※ 관련자 신분상 조치 완료, 업체 벌점 부과 절차진행 중(상벌심사위원회 7월 개회 예정)	조치완료
3	수목 식재 시 뿌리분 결속 재료(고무바, 철선) 미제거	시정요구, 통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식재수목 4,250주 중 1,020주 결속재료 제거 완료 - 잔여수목 3,230주는 수목 생육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순차적 제거 예정 ※ 관련자 신분상 조치 완료, 업체 벌점 부과 절차진행 중(상벌심사위원회 7월 개회 예정)	조치중
4	조립식 간이 흙막이(TS 판넬) 기성 정산 및 설치 부적정	시정요구, 통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과다정산된 공사비 18,912천원 감액 결정 완료 ※ 관련자 신분상 조치 완료, 업체 벌점 부과 절차진행 중(상벌심사위원회 7월 개회 예정)	조치완료
5	조형연목 바닥 방수공법 임의변경 시공	시정요구, 통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외부전문가의 적정성 검토결과에 따라 방수공법 변경 후 (시멘트 액체방수 → 우레탄 방수) 시공자 부담으로 전면 재시공 완료 ※ 관련자 신분상 조치 완료, 업체 벌점 부과 절차진행 중(상벌심사위원회 7월 개회 예정)	조치완료

6	'잔디매트' 설치공종 과다 설계	주의요구, 통보	<p>당초 고가의 사급자재로 설계된 "잔디보호매트"의 수급 방법을 관급자재로 변경하고 수량도 13,261㎡→4,335㎡로 감량 조치 완료</p> <p>※ 관련자 신분상 조치 완료, 업체 벌점 부과 절차진행 중(상벌심사위원회 7월 개최 예정)</p>	조치완료
7	식물문화센터 전망대 내 진설계 부적정	통보	<p>향후 건축물 유지관리 옥상 전망대의 거동을 수시 점검 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함. (하부 철골보를 통해 해당 부분 접근 및 점검 가능)</p> <p>※ 관련자 신분상 조치 완료, 업체 벌점 부과 절차진행 중(상벌심사위원회 7월 개최 예정)</p>	조치완료
8	공원 내 신설교량 '현장도장' 미시공	시정요구, 통보	<p>현장도장 미실시된 3개소 중 1개소는 현장도장 완료, 2개소는 8월 현장도장 예정임.</p> <p>※ 관련자 신분상 조치 완료, 업체 관련기술자 '주의조치'완료</p>	조치중
9	온실동 외부 창호(스틸 커튼월) 하부와 기초 구조물간 이격 발생	시정요구, 통보	<p>시공사 부담으로 보완시공 완료함.</p> <p>※ 업체 관련기술자 '주의조치'완료</p>	조치완료
10	식물문화센터 층간방화구획 부적정	시정요구	방화구획 보완 시공완료	조치완료

2. 2018년 설명절대비 하도급 대금 특별점검

감사개요

- 대상기관 : 시 소속 기관이 발주한 15개 건설공사 현장

발주처	건수	대상 공사현장
계	15	진행중인 15개 공사현장
도시기반시설본부	6	하남 ○○○공구 건설공사 등 6개소
서울주택도시공사	7	서울 ◇◇◇단지 건설공사 등 7개소
동부수도사업소	2	◆◆◆ 대급수관 정비공사 등 2개소

- 기 간 : 2018. 1. 30. ~ 2. 7.(기간 중 7일간)
- 인 원 : 안전감사담당관 하도급감사팀장 등 7명
- 감사범위 : 점검일 기준으로 6개월간 당해 사업의 대금지급 관련사항

감사중점

- 하도급대금·건설기계 대여대금·근로자 임금 적기 지급여부
-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·근로계약서 등 각종 서면계약서 작성실태

감사결과

- 지적사항 총괄

(단위 : 건, 명)

총건수	합 계		변 상 (금액)	징계 (인원)	시정(금액)				주의 (인원)	개선	권고	통보	고발 (인원)	현지 조치
	신분상 조치인원	재정상 조치금액			소 계	추징 (환수)	감 액	기 타						
28			0	0	1	0	0	1	9	0	0	8	0	10
	8	0	(0)	(0)			(0)	(0)	(8)				(0)	

○ 주요 지적사항

1. 장비대금 등 체불 및 기성금 미지급

-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받았을 때에는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,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일부 공사장에서 장비대금 181백만원 체불함.

→ 행정지도 등으로 설 명절 이전 지급토록 조치(장비대금 181백만원, 1월 기성금 3,682백만원)

2. 근로계약서 작성의무 불이행

-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·계산방법·지급방법, 소정근로시간,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나 근로계약을 작성·교부하지 않고 건설공사 현장에 인력을 투입함.

→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토록 통보 조치, 지도감독 철저 조치

3.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의무 미이행

-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임대료·임대차 기간·건설기계 1일의 가동시간 등을 명시한 건설 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은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하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건설기계를 사용함.

→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토록 통보 조치, 지도감독 철저 조치

4.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보증서 미교부

-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당사자는 임대료·임대차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,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 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나 건설기계를 임차하면서 대금지급 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았음.

→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토록 통보 조치, 확인업무를 소홀히 한 공사관리관에게 신분상 주의 요구

□ 결과조치

- 처분사항을 대상기관에 통보('18.2.12, '18.5.4.)하여 조치토록 함

붙임

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역 및 조치현황

연번	처분요구 내용	처분유형	조치사항	비고
1	장비대금 등 체불 및 기성금 미지급	현지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4개 공사 장비대금 체불 : 342백만원 ○ 9개 공사 기성금 선금 지급 : 3,682백만원 (가부-2184, 2018.2.12) 	조치완료
2	근로계약서 작성의무 불이행	통보 주의요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급인 과태료부과 요청 ○ 공사감독자 신분상 '주의' 조치 	조치완료 조치완료
3	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및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	통보(2) 주의요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급인 행정처분 요청 ○ 공사감독자 신분상 '주의' 조치 	조치완료 조치완료
4	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및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	통보(3) 주의요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급인 행정처분 요청 ○ 공사감독자 신분상 '주의' 조치 	조치완료 조치완료
5	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	통보(4) 주의요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하수급인 행정처분요청 ○ 공사감독자 신분상 '주의' 조치 	조치완료 조치완료
6	하도급 건설공사대장 변경내용 미통보	통보 주의요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변경통보 요청 ○ 공사감독자 신분상 '주의' 조치 	조치완료